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부 · 정치부 · 사회부 · 시민사회담당

발 신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단장 신영철)

담 당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정택수 부장 02-3673-2143)

제 목 : [보도자료] 행안부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 (총 4매)

보도일자 : 2024. 02. 15.(목) (배포 후 즉시)

배포일자 : 2024. 02. 15. (목)

## 행정안전부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각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경실련은 어제 (14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전자메일로 발송했다.

해당 행안부 공문은 공공계약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되어 유찰, 공사 기간 지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 ‘22~’ 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00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공사(중평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시·군·구·교육청·공사·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어떤 근거를 토대로 지자체와 교육청, 공기업 등에 이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고자 1월23일경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관련 정보는 부존재한다는 답변이 돌아오에 따라 금번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앞으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공개질의 한 내용은 ▲각 지자체 등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법적근거 및 지자체의 위법행위, ▲동일 노선 공사 중 낙찰 또는 유찰된 공사 각각에 대해 적정예산 확보 판단 여부, ▲공사비 절감방안 마련 여부 등 세 가지이다.

국가기관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출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행안부가 적절한 근거조차 없이 이러한 공문을 발송하여 건설사에게 공사비를 퍼주도록 요구한 것이라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경실련은 행안부가 2월 23일 금요일까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첨부 1

##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 공문에 대한 공개 질의서

지난 1월 19일 행정안전부는 시, 도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발주 요청”이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은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계약은 유찰, 공사기간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이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국가시책사업은 공정한 경쟁(가격경쟁 포함)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는 행안부를 포함한 모든 공조직이 지켜야 할 의무라 하겠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행안부 공문이 어떠한 근거와 기준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1월 23일경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행안부는 비공개결정을 하면서 그 사유를 “정보 부존재”라 하였습니다.

행안부의 “정보 부존재” 답변은, 아무런 근거나 기준없이 각 지자체 등을 지방계약 법령 등을 위반한 집단으로 단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2월 23일(금요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개질의 #1	<p>귀 부에서 각 지자체 등이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발주하였다고 판단한 법적근거는 무엇이고, 각 지자체 등의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참고로 경실련은 행안부가 유찰관련 정보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다수 사업의 유찰을 이유로 적정예산 확보를 과연 요청할 수 있는지 또한 큰 의문이 듭.</p>
공개질의 #2	<p>귀 부는 공문에서 동일한 노선 공사에 있어서 대부분이 낙찰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p> <p>#2-1 : 그렇다면 동일 노선 공사에서 낙찰된 공사는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 것 인지요?</p> <p>#2-2 : 동일 노선 공사에서 유찰된 공사에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요?</p>
공개질의 #3	<p>정부는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적기구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영리 법인의 이익여부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p> <p>#3-1 : 귀 부에서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공사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요?</p> <p>#3-1 :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공사비 절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 있는지요?</p>

## ■ 첨부 2

### <그림1> 행안부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 공문



##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

---

1. 항상 지방계약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계약의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발주하는 일괄입찰 공사 등에서 유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괄입찰 공사 등의 경우 '22-'23년 발주된 27건 중 14건(51.9%)에서 유찰 발생  
○ ○시에서 발주한 도시철도 건설공사(종평제)의 경우 8개 공구 중 3개 공구에서 유찰 발생

3.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공공계약은 유찰, 공사기간 지연 등으로 이어져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민 편익을 저해하고 금리인상,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업계 등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4. 이에,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공공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서는 시·군·구, 교육지원청, 공사·공단 등 지방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기관(계약, 예산, 사업 담당부서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 3

<그림2> 경실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부존재 답변

<p>정보 부존재, 진정·질의, 종결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p>	<p>정보부존재 사유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p> <p>'적정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발주 요청' 공문(회계제도과-558호,2024.01.19.)과 관련하여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유찰이 발생한 공사 통계에 대한 공사명, 발주기관, 입찰공고문, 입찰자 수,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률, 낙찰업체 등 세부자료는 우리 부에서 생산, 접수하지 않은 정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입찰 관련 세부자료는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또한, 통상적으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사업이 발주될 경우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 부는 「지방계약법」 소관 부처로서 해당 공문은 지방계약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발주하도록 안내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p>※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제11조제2항)</p>
<p>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사항</p>	<p></p>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